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29

발의연월일: 2022. 6. 14.

발 의 자:조응천·강준현·강훈식

김영진 · 김윤덕 · 유기홍

임호선 · 정태호 · 최기상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자를 포함함)로부터 분양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 단독 소유와 공유의 형식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자"와 일반적 의미의 "공유자"의 의미가 서로 달라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시설의 우선적 사용권을 채권적으로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회원"으로, 물권적(단독소유권, 지분소유권 등)으로 분양·이전받아 그 권한을 확보한 자는 "공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원'이사적 약정 등으로 시설 사용권을 수인이 공유할 경우 '공유자'라는 법

적 의미와 충돌됩니다.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등).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유자"란"을 "'소유자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호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9호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공유자"란</u> 단독 소유나 공	5. <u>"소유자등"이란</u>
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	
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	
은 자를 말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	2
서 규정하는 업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	나
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	
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u>공유</u>	<u>소유자</u>
<u>자</u> , 그 밖의 관광객에게	<u>ㄷ</u>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 용하게 하는 업

3. ~ 7. (생략)

② (생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u>소유자등</u>
<u>.</u>
②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 업자와 <u>공유자</u>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1. ~ 4. (생략)
- ③ ~ ⑩ (생 략)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생 략)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 3. <u>공유자</u>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③ ④ (생 략)
 -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u>공유자</u>·회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 5. (생략)
 - 6. <u>공유자</u>·회원의 대표기구 구 성

<u>소유자등</u>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소유자등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소유자등</u>
1. ~ 5. (현행과 같음)
6. <u>소유자등</u>

7. 그 밖에 <u>공유</u> 지	<u>\V</u> ·회원의 권익	ļ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 지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 8의3. (생 략)
-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 20. (생략)

② ~ ⑦ (생 략)

7 <u>소유자등</u>	
세35조(등록취소 등) ①	
,	
1. ~ 8의3. (현행과 같음) 9	
<u>소유자등</u>	
9의2.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